
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

2019. 1.



고용노동부



목 차



I.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	1
II.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3
III. 주요업무 추진계획	4
1. 2019년 역점 추진과제	4
2. 쟁점(갈등) 과제	12
3. 신규 발굴 과제	15
IV. 2019년, 이렇게 바꾸겠습니다	20

【별첨】 국정과제 추진현황

I.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

- '함께 잘살기'를 목표로 일자리문제 해결 및 일자리의 질 제고에 역량집중
 - 특히, 우리사회 격차 해소를 위해 ▲비정규직 정규직 전환,
▲최저임금 인상, ▲노동시간 단축을 적극 추진
 - 그러나, 어려운 경제상황, 소상공인의 호소,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사전 준비 부족 등에 대한 비판도 상존
 - ▶ 국민들과 충분히 공감하면서 정책을 추진했는가?
 - ▶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기회가 충분했는가?
- ⇒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면서 포용의 가치를 적극 구현, "다 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사회"로 나아가야 할 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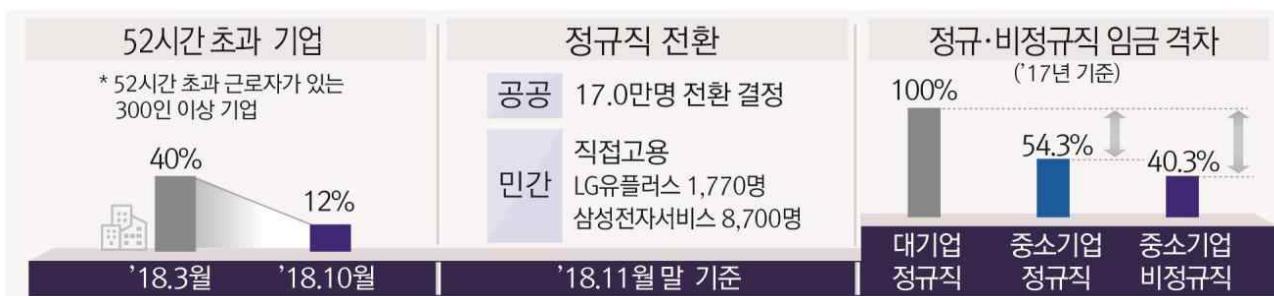
1. 일자리 문제해결 노력



- (청년) 청년 채용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 → 청년고용률 상승, 취업자수 증가 등 고용지표 개선
 - * 청년과 함께 '청년 일자리 대책(3.15)' 수립 / 청년 고용지표(15-29세, '18.10월 기준)
 - ▲고용률: 42.9%(1.1%p↑), ▲실업률: 8.4%(0.2%p↓), ▲취업자 수: 41천명 증가(인구 134천명 감소)
- (여성) 여성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·성차별 해소, 모성보호 지원 중점 추진
 - 남성육아휴직('17년 9,559명 → '18년 14,569명)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이 크게 증가. 여성고용률이 '00년 이후 최고 수준(57.5%)
- (신중년) 초고령사회에 대비, 생애경력 설계를 통한 인생3모작(주된 일자리→ 재취업 일자리 → 사회공헌일자리) 가능성 제고
 - * 지역 사회공헌활동 지원('18년 6.5천명), 신중년 다수 참여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(시범사업)

☞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좋지 않은 가운데, 정책 체감도 부족 문제 제기

2.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



- (노동시간 단축) 1주 최대 노동시간 52시간 규정, 특례업종 축소(26종 → 5종) 등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 국회통과(2.28) 및 공포(3.20)
 - 관계부처 합동으로 '18.5월 「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」을 마련하여 현장 중심으로 지원하고, '계도중심'의 지도(~12월) 실시
 - * (실태) 52시간 초과노동자 기업 감소(40 → 12%) / 채용규모 확대(2.9 → 6.5만명) ('18.3 → 10월)
- (최저임금) 인상('18년 7,530원, '19년 8,350원)에 따른 현장안착 지원
 -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*을 통해 영세사업주의 경영상 부담 완화 및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유지 유도(5인 미만,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 중심)
 - * 11월말 기준, 신청자 270만명(목표대비 114.4%), 지원 206만명(목표대비 87.1%)
 - 관계부처 협업으로 소상공인·영세사업주 부담 완화 대책 마련·추진
 - * 카드수수료 등 경영비용부담 완화, 공정거래질서 확립, 안정적 임차여건 조성 등
- (정규직 전환)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동시 추진 → '18.11월 말 기준, 17.0만명 정규직 전환 결정
 - 과견·사내하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근로감독 및 직접고용조치 등을 통해 정규직 고용관행 민간으로 확산
 - * **직접고용:** LG유플러스(1,770명), 삼성전자서비스(8,700명), (주)대유에이피(141명) 등
- (산업재해 예방) 발주자·원청 등 주체별 책임강화, 고위험분야 집중관리 등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
 - 사고사망자가 전년 대비 25명($\triangle 3.3\%$, 9월 기준) 감소하였으며, 특히 타워크레인 사고는 '17.12월 이후 현재까지 미발생

☞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기흐름 등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

II.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□ 경제 및 고용여건

- 대내외 여건 및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유사하거나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
 - * 경제성장률(%): ('17) 3.1 → ('18) 2.7 ~ 2.8 → ('19) KDI 2.6, 한국은행 2.7
 - '19년 취업자 수는 올해와 유사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. 고용상황 반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
 - * 취업자수 증감(만명): ('17) 32 → ('18.1~10) 9.7 → ('19) KDI 10, KLI 12.9, 한국은행 16
 - * 실업률(%): ('17) 3.7 → ('18.1~10) 3.9 → ('19년) KDI 3.9, KLI 3.9, 한국은행 3.8
- 자동차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의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 계속
- 저성장 기조 속에서 양극화, 저출산·고령화,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등의 문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

□ 노사관계 상황

- 현장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,
 - 특고·비정규직,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주요 노동이슈를 둘러싼 갈등 확산, 집회·농성 등 불안요인 상존
-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(11.22)과 함께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 등이 향후 노사·노정관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

□ 정책추진 방향

포용적 노동시장 구축

일자리 기회 확대

-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
- 지역 주도 일자리 문제 해결
- 산업별 일자리 창출력 제고

일자리 질 향상

- 노동시간단축·최저임금 현장 안착
- 차별 없고 공정한 일터 조성
-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

미래 환경변화 대비

- 고용서비스 혁신 및 고용안전망 확대 강화
- 산업현장 변화에 맞춘 직업훈련 확대

III. 주요업무 추진계획

1

2019년 역점 추진과제

① 취약계층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

현장의 목소리

- ▶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, OECD 목표와 일치(11.21 OECD 경제전망)
- ▶ 우리 회사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 목돈이 생겼어요(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 김○○)
- ▶ 퇴직한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세무 강화, 주민들 반응이 좋았어요 (지자체 간담회)
- ▶ 제조업은 구조조정 등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, 고용유발 효과가 큰 업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(전문가 간담회)

정책 추진 방향

- ◆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,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사업 확대
- ◆ 지역이 주도하고,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 강화
- ◆ 산업별 일자리 창출력 강화 및 구조조정 등 고용변동에 적극 대응
- ◆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빠짐없이 일자리 기회 제공

세부 내용 및 이행 계획

[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 확대]

- 일자리사업 규모 확대('18년 19조 → '19년 23조, 19.3% 증가)
 - 직접일자리 지원 3 → 4조원(96만명), 직업훈련(306만명)·고용서비스(45만명) 등 9 → 11조원, 실업소득 지원 7 → 8조원
-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(사회보장시스템과 연계)
 - ↳ 취약계층 참여비율: '17년 36.3% → '19년 42% 목표
- 중앙·자치단체 합동지침을 통해 취약계층 참여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(사업별 취약계층 비율 5~10%p 상향)
- 예산 조기집행, 성과평가 등을 통해 국민 체감도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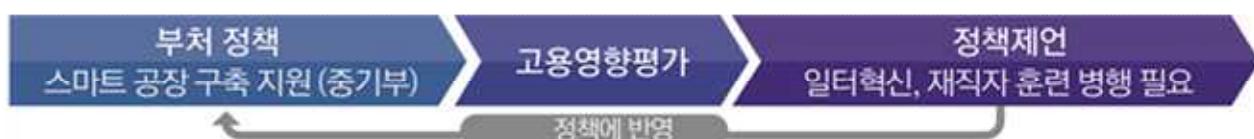
[일자리 문제,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]

◇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협업 지원

- 지자체 민선7기 공약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연차별 계획 수립 지원(~'19.3월)
-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(1,083억원)을 통한 지자체 자율성 보장
 - 지역일자리 사업의 창의적 설계유도를 위해 '규제완화' 유형 신설
 - * (예) 국비 편성비율(인건비 20%, 직접사업비 65%, 간접사업비 15%) 제한 완화
 - 고용위기지역(7개)에서 현장에 맞는 일자리사업 패키지*를 설계·추진토록 지원
 - * 실직자 유턴사업 지원, 청년 훈련 및 채용연계 등
- 지역내 사회 문제(아동·치매노인 돌봄, 환경 등)를 해결하는 「우리동네 사회적기업*」 발굴·확산
 - * (예) '급식- 방과후 수업-등하원' 서비스를 묶어 원스톱으로 제공('19. 부천·울산)
 -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로 지역내 다양한 기업의 진입 유도
- 청년·신중년 일자리 사업에서 지자체와 정부 간 연계·협업
 - 청년구직활동비,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취업 전-후를 연계 지원하고, 지자체의 청년센터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(20개소)
 - * 구직시: (중앙정부) 졸업후 2년 이내 → (지자체) 2년 이후(장기실업자 지원)
 - * 취업시: 장기근속·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
 - 「신중년 일자리 지방·중앙 협의체」를 신설, 지역수요에 맞는 사업 운영
 - * ▲경력형 일자리(2.5천명), ▲사회공헌활동(6.5→10천명), ▲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(70억) 등

[산업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구조조정 적극 대응]

- 산업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
 - 산업별 고용영향평가를 통한 정책제언으로 고용친화적 정책유도
 - * ('18년) 기계업종 스마트공장, 정보통신업종 하도급문제 등 27개 업종 ⇒ ('19년) 스마트팜 육성, 빅데이터 분야 등 대상 업종 확대



- 산업별(17개)·지역별(16개) 인적자원개발위를 활용한 맞춤형 인재양성

* 산업별·지역별 인력수요 및 훈련수요조사를 활용한 훈련 실시(71개 공동훈련센터)

○ 주요 제조업 구조조정 대응 및 지원



자동차

- 주요 거점별 신속대응팀 운영, 고용동향 모니터링, 이직가능 일자리 파악 및 맞춤형 훈련 지원

* 퇴직 예정자 및 가족구성원에게도 심리안정, 채무상담, 취업지원 실시



조선업

-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(~'19.6월)을 추진하면서 고용회복 시기에 맞는 신규인력양성 및 취업지원, 고용장려금 지급

[취약계층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자리 어려움 해소]

○ (청년) 취업활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'청년구직활동지원금' 신설(50만원×6개월), 청년과 기업의 호응이 좋은 핵심사업* 지속 확대

* 성실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「청년내일채움공제」 '18년 15.5만명 → '19년 25.5만명 중소기업에 청년의 취업을 돋는 「청년추가고용장려금」 '18년 9만명 → '19년 18.8만명

- 온·오프라인 청년센터 확충, 양질의 해외일자리 진출·사후관리 강화

○ (여성) 출산·육아·일자리로 이어지는 애로 해소, 경력단절 예방

출산

-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,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설

육아

- 육아휴직 지원 확대: 통상임금 40 ⇒ 50%, 상·하한액 20만원 상향
-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(200 ⇒ 250만원)

일자리 환경

- 「남녀고용평등법」全사업장 확대 적용 ('19.1~)
- 적극적 고용개선조치(AA) 적용사업장 확대

○ (장애인)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및 훈련 인프라 확대*, 장애인 고용의무(공공 3.4%, 민간 3.1%) 이행 촉진

* ▲ 중증장애인 지원고용(2.5→5천명), ▲ 근로지원인 지원(1.5→3천명),
▲ 지역맞춤형 '동료지원가' 취업활동지원(9.6천명), 발달·맞춤훈련센터(13→20개소)

○ (신중년) 생애경력설계 서비스(3만명) 다양화(업종·직종) 및 중소기업 참여 확대, 정년 이후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에 대한 지원 추진

2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의 현장안착

현장의 목소리

- ▶ “퇴근후엔 백화점 문화센터로” 주 52시간 이후 매출액 27% 증가」(BC카드 빅데이터 분석)
- ▶ 기업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필요(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)
- ▶ 국민 45% “최저임금 인상 논란 해소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보호정책 강화 또는 정부 재정지출 확대 필요” (설문조사, 한국사회여론연구소)

□ 그간 경과

- 노동시간 단축 법 개정(3.20 공포),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('18년 7,530원<16.4%↑>, '19년 8,350원<10.9%↑>)에 따른 현장안착 노력 계속
 - 다만, 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경영상 어려움 호소. 일부에서는 최근 고용상황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

□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[노동시간 단축, 일터와 삶의 변화]

- 법 개정에 따른 주 최대 52시간제의 현장안착을 위한 집중 지원
 - 일터혁신 모범사례를 발굴·확산하고,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 개선 노력('19년 8천개) 유도
 - 노동시간단축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터 혁신 컨설팅 지원, 재정 지원* 확대 및 근무혁신 인센티브제** 도입
- *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: '18년 209억 → '19년 347억
- **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시 인센티브(감독·세무조사 면제 등) 제공
- 노·사·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탄력근로제 합리적 개선 추진
 - *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활용성 제고와 건강권 침해 및 임금감소 수단 오남용 방지 등
-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적용('19.7월~)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 주요 업종별 TF를 운영, 대응상황 모니터링 및 애로사항 지원
- 50~299인 사업장 적용('20.1월~)에 대비, 실태조사(1,000개 사업장 대상) 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실시

 노선버스 (국토부)	 사회복지 (복지부)	 ICT·SW업 (과기부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금보전 및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○ 면허 취득비용 지원 ○ 지자체 인력 양성사업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육교사 업무 대체인력 총원 ('19년 1.5만명) ○ 근로형태별 가이드라인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발주문화 개선*을 위한 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” 개정 추진 * 적정기간 산정, 요구사항 상세화 등

[최저임금,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안정에 실질적 도움]

- 지방노동관서*,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및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** 등을 통해 최저임금 취약업종 사업장 방문 홍보 및 교육 강화
 - * 경비·청소업, 음식·숙박업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지청별 간담회·설명회 집중개최 추진
 - ** 지역별로 인사·노무관리 업무경력 보유자 등을 위촉하여 적극 실시
- 소상공인단체 등과 협업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
-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ILO 등 국제기준*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완하고,
 - * ILO 최저임금 결정 협약(131호, '01.12월 비준),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에서 근로자 생활 보장을 위한 기준들과 고용 목표 및 경제적 요인들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
 - 구간설정 등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추진
-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·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既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*의 차질 없는 이행 추진

* **발표대책:** 「영세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대책 및 추가대책」('17.7.16, '18.1.18), 「저소득층 일자리·소득지원 대책」('18.7.18), 「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대책」('18.8.22)

- 아울러, 단기적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



- 개편된 최저임금 산입범위*('19.1.1 시행)에 대한 현장 이해도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관 교육 강화 및 근로자·사업주 대상 적극 홍보
 - *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정기상여금, 복리후생비를 단계적으로 산입함으로써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('18.6.12 개정)

[3] 차별 없고 건강한 일터 조성

현장의 목소리

- ▶ 직장 내 괴롭힘 '일상화'.... 66.3% "최근 5년간 당한적 있어" (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, KLI)
- ▶ "여성들은 성희롱을 신고하고 싶어도 실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못하고 있어요" (18.4월 여성단체 관련 간담회)
- ▶ LG전자 "서비스 협력사 3,900명,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, 근로조건의 질 개선을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겠습니다."(노사간담회)

그간 경과

- 폭언·정신적 학대 등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「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」(18.7월) 발표
-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통해 양극화 해소 및 「고용-복지-성장」 선순환 유도
- '22년까지 '산재사고사망자 절반(1,000명대 → 500명대)으로 줄이기'를 목표로 다양한 대책 마련·추진(「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」(18.1월) 등)

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[국민의 삶과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, 직장 내 갑질·임금체불 근절]

- 직장 내 괴롭힘 예방·대응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 강화, 직장 내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 실시(노사정 협약 등 추진)
 - * 법사위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·산업안전보건법·산재보험법 개정안 조속처리 노력
 -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도 병행



-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을 위한 매뉴얼·취업규칙 표준안 마련·배포
- 관련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엄정 대응
- 근로자 심리상담서비스(EAP) 확대·내실화를 통해 피해 근로자 지원

- 성차별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도·감독을 강화하고,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추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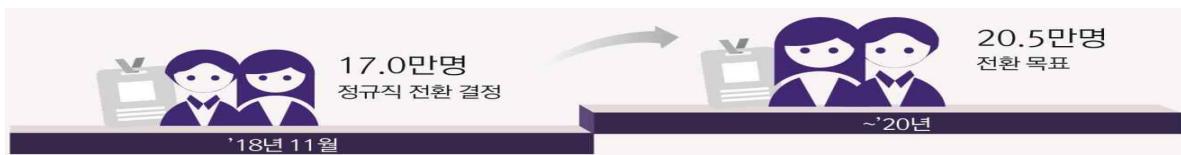
- 기업 내규(노사협의회, 취업규칙)에 '성희롱 예방 및 조치 기준' 명시 의무화
-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확대 ('18년 300개소 ⇒ '19년 2,100개소)
- 익명신고 시스템 활성화,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, 의심사업장 수시 감독 실시 등
- 사업주의 성희롱 및 조치의무 미이행,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

- 특히,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위원회에 성차별 구제절차 마련 추진

-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, 실질적으로 보장
 - * ▲ 재직자 체당금 신설 추진, ▲ 소액체당금 지원한도 인상(400만원→1,000만원) 등
 - 도덕적 해이·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* 병행
 - * ▲ 상습 체불 법정형 상향, ▲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변제금 회수, ▲ 제재금(부과금) 신설 등
 - 임금체불예방을 위한 기초노동질서 점검 강화('18년 7천개→'19년 1만개)

[정규직 고용관행 확산과 채용비리 근절로 차별없는 일터 조성]

-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, 차질 없는 추진



- '19년 중 현장밀착형 지원으로 1·2단계 전환 결정 마무리, 3단계 민간위탁도 정책방향 수립·추진
 - * (1단계) 중앙행정기관·공공기관·자치단체 등 853개, (2단계) 출연출자기관 등 600개, (3단계) 민간위탁
 -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* 정착으로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고, 표준인사관리규정('17.12)으로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관리 기반 마련
 - * 비정규직 채용 시 사전에 채용사유 및 예산의 적정성 등 심사 → 승인 시 채용
 - 자회사에 대한 우려 불식 및 전환 방식 관련 갈등 완화를 위해 '바람직한 자회사 운영모델' 마련 등 노력('19년)

○ 민간부문으로 정규직 고용관행 확산

- 비정규직 정책은 노·사 이견이 첨예하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→ 노·사 논의과정 등을 거쳐 관련 법·제도 개선 추진

* 주요내용: ▲ 상시·지속 업무 등의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(사용사유 제한), ▲ 차별 시정제도 개편, ▲ 하청근로자·특고 보호 등

- 차별감독 지속 확대 및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사업장 지도 병행
 - 지방관서에 차별담당자를 지정하여 차별 기획감독을 실시하고, 하도급 다수 활용 업종·지역 등에 대한 불법파견 감독 강화

○ 채용비리 근절

- 부정청탁, 금품 제공 등 채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(처벌규정 신설, 채용절차법 개정*)

* 주요내용: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,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, 향응 등을 제공·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-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내실화하고, 민간의 관행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현장점검 추진
- 구인기업 채용실태, 해외법제 연구용역* 결과 등을 토대로 별도의 정부입법 추진 검토('19.上)

* 국회 제출된 41개 채용절차법 개정안에 대한 시장 수용성 실태조사, 해외의 채용절차 관련 법규정 등에 대한 연구('18.12월)

[산재예방 노력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]

○ 산업재해 예방

- 법의 보호대상 확대,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 현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내용을 반영한 '산업안전보건법' 개정 추진(국회 제출, 11.1)
 - 특고노동자(9개 직종) 및 배달종사자 안전·보건조치 마련, 도급 허용 유해·위험작업 범위 및 원청의 안전·보건조치 규정
 - '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비공개 승인' 사전심사 기준 마련
-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확충(現 3개소 → 7개소)하여 대형사고를 전담(특별감독 등)하고, 추락·질식 등 고위험분야 집중 지도·감독

○ 산재보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

- 건설기계 등 재해빈도가 높고 가입수요가 많은 특고 직종 및 대표적 자영업종인 소매업, 음식점업 1인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
 - * 임신 중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산재보상방안 마련 추진
- 사업주의 원직복귀계획서 제출제도* 도입, 요양 중 직장적응훈련 활성화 등 산재환자의 신속한 직장복귀 지원
 - * 산재환자 발생시, 사업주는 "원직복귀계획서(원직복귀 시기, 복귀 업무 등 포함)"를 작성·제출('19.3월~, 시범사업) → 시범사업 후 의견수렴을 거쳐 법개정(의무화) 추진

④ 포용과 책임의 사회적 대화

 현장의 목소리

- ▶ 경사노위가 기존 노사정 틀을 깨고 다층적·사회적 합의체로 출범한 것은 환영할 일,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하여 대타협에 기여하겠음(소상공인연합회장)
- ▶ 중앙단위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에서도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될 필요 (한국비정규직네트워크 등, 노동부 민관 정책협의)

□ 그간 경과

[새롭게 시작하는 사회적 대화]

- 11.22,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인 **경제사회노동委** 공식 출범*
 - * 참여주체 확대(청년, 여성, 비정규직, 중소·중견기업, 소상공인), **사회 각 계층 관련委** 신설 등
 - ** 8년 만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(1.31) 및 대화기구 전면 개편(6.12)
- **의제별委(4개)** · **업종별委(4개)**^{*},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委 및 노동시간제도개선委(발족 준비중)에서 논의 진행
 - * (의제) ① 노사관계제도·관행 ② 사회안전망 ③ 산업안전보건 ④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
(업종) ① 금융 ② 해운 ③ 보건 ④ 공공 <보건·공공은 설치 준비중>
 - ▶ 8.21, 사회안전망개선委, 취약계층 소득보장방안 첫 노사정 합의
 - ▶ 11.20, 노사관계제도·관행개선委, ILO 핵심협약 관련 공익위원회 발표

[ILO 핵심협약 비준 등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 조성]

- ↳ 우리나라는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 금지 협약(4개) 미비준
- (결사의 자유 협약) 경제사회노동委 「노사관계 제도·관행 개선委」에서 사회적 대화 진행(7월~), 11.20. 공익위원회^{*} 발표
 - * 6개 과제: ① 실업자·해고자 노조가입 ② 노동조합 임원 자격 ③ 공무원의 노동 조합 가입 ④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⑤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 ⑥ 근로시간면제제도
- (강제노동 금지 협약) 협약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방안^{*}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(국방·법무부)와 중점 협의 진행
 - * (29호) 보충역(사회복무요원 등) 개선 (105호) 국가보안법, 노조법 등의 징역형 개선

□ 쟁점(갈등요인)

- (주체) 전국단위 노사단체 뿐만 아니라 청년, 비정규직 등 미조직 단체가 참여, 다양한 목소리 제기와 함께 공감대 형성에 애로
 - * 민주노총은 '19.1.28.(예정)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 예정
- (의제) 노동시간(탄력적 근로시간제), ILO 핵심협약 등 노사 이견이 큰 의제와 관련한 노사·노정 갈등 표출 예상
 - 특히, 노사관계 법·제도 개선은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하고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, 갈등관리가 중요한 상황
- * 노사제기 주요 쟁점:
 - ▶ 勞: 특고 노동기본권 보장, 단체교섭·쟁의대상 확대, 손배·가압류 제한 등
 - ▶ 使: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, 사업장 점거 금지, 대체근로 허용 등
- (문화)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사회적 협의문화 미성숙으로 인해,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라는 비판 지속 우려

□ 정책 추진 방향

◆ 노·사·정 양보와 타협에 기반한 대화 추진

☞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작은 타협(Small Deal) 도출, 이를 통한 국민적 기대 제고 및 사회적 대타협(Big Deal)의 기반 마련

[새롭게 시작하는 사회적 대화]

- 청년·여성·비정규직·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
 - 경제사회노동委 본위원회 구성과 별도로, 청년·여성·비정규직·소상공인 등 사회 각 계층별委* 조속히 구성·논의 활성화
 - ↳ 동 논의는 향후 정부 정책과 연계, 적극 지원
 - * 청년·여성·비정규직 등이 스스로 의제 개발 및 정책 제안(위원회별 10명 이내)
- 미조직 취약 노동자 대상 상담·교육 등 권리보호방안 마련('18년)
 - *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사업, 노동인권교육,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 사업 개편

-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 논의
 - 연금개혁, 사회안전망, 노동시간, 안전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에 대한 적극적 논의 촉진
 - 의제별 성과를 기반으로, 비정규직 제도개선, 사회 양극화 해소 등 의제에 대해서도 추가 위원회 구성·논의
 - * 노사정 합의 4개 업종별위원회 성과를 기반으로, 향후 유통·자동차 등 추가 검토
- 중앙 - 지역 - 사업장 단위의 종충적 사회적 대화 확산
 - (지역) 노사민정협의회 등 지역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 확산 지원

- * 노사상생형 모델 전국 확산 지원
 - ▲ 지역 중심의 일자리 모델 발굴 컨설팅 (8억 → 16억)
 - ▲ 세제 인프라 등 관계부처 패키지 지원
 - 한편, 지역별 사회적 대화에 청년·여성·비정규직·중소기업 등 미조직 단체 참여 확대
 - (사업장) 現 정규직·원청 중심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대표제도 개편*
 - * 비정규직·파견·사내하도급 등의 노사협의회 참여, 근로자위원 선출제도 개선 등
→ 경사노위 「노사관계 제도·관행개선委」에서 논의 예정

[ILO 핵심협약 비준 등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 조성]

- (결사의 자유 협약) 공익위원회를 바탕으로 노사 논의 지속
 - 단결권(공익위원회)과 함께 단체교섭·단체행동권 관련 법·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진행, 포괄적 합의 도출 지원
 -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자대표제도 등 개선방안도 논의·마련
- (강제노동 금지 협약)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비준절차 진행

5 고용서비스 혁신 및 고용안전망 강화

현장의 목소리

- ▶ 현재 고용센터는 지원금 집행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아쉬움. 구직자의 상담만족도를 개선하고, 알선취업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본연의 역할 회복 필요(고용서비스 혁신 T/F)
- ▶ 동일한 민간기관이 여러 개의 위탁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알기 힘들고, 역량이 낮은 기관의 퇴출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(고용서비스혁신 전문가포럼)
- ▶ "50세 이상 근로자도, 장애인도 퇴직하면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.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지금보다 늘려 주세요"(부산 현장노동청)

정책추진 방향

- '98년 외환위기, '08년 세계금융위기 등 경제침체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, 고용안전망을 지원
⇒ 엄중한 고용상황, 고용형태 다양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고용 서비스 혁신 및 고용안전망 강화 추진

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[모든 국민의 취업을 책임지도록, 고용서비스 혁신]

○ 공공·민간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

- (고용센터) 취업지원 중심으로 기능 강화(고용센터 혁신방안 마련, '18.12.27)

- ▶ 실업인정제도 개편 등을 통하여 고용센터 핵심역량이 취업지원에 집중되도록 업무 프로세스 개편

* (실업급여) 재취업 고의지 수급자 대상 집중 취업지원, 장기수급자 특화 재취업 지원

* (취성패) 취업장애요인 해소(예: 결혼이민자 언어교육), 대상·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

- ▶ 지역여건에 맞춰 실업급여·직업훈련·취업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'취업중심 패키지센터' 시범 운영('19.4~10월)

- ▶ 중앙·지방·민간의 고용서비스 역할분담 및 협업강화를 위한 '공공 고용서비스 혁신방안' 마련('19.上)

- (고용·복지연계)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일을 통한 자립기반을 형성 할 수 있도록 고용·복지 연계서비스 내실화

* 고용복지+센터 담당자가 구직자의 개인적 특성과 가구여건에 맞춰 밀착서비스를 제공하는 '사례관리협의체' 운영 내실화

- (민간위탁기관) 고용서비스 표준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인증기관에 한해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 → 민간고용서비스 품질 개선

* (18~20년) 민간위탁기관 인증평가 실시 → (21년) 인증평가 결과를 위탁기관 선정시 적용

- 지능정보화 기술기반 서비스 혁신

- 고도화된 온라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 및 구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

▶ 기존 워크넷을 개편하여 ①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매칭시스템 탑재('18.12월 시범운영), ②위치기반 기업지도 서비스 제공('19년말)

* ① 개인의 일자리이력, 교육·훈련, 자격정보 등을 AI가 분석 후 최적의 일자리매칭 지원
② 개별기업의 고용현황, 기업체의 사업장현황 등 고용서비스에 필요한 기업정보 제공

▶ 개인 맞춤형 이력서·자기소개서 작성* 지원, 회원정보 분석을 통해 유형별 맞춤정보를 메인화면에 제공하는 등 사용자 편의 제고

* 고용보험, 워크넷, HRD-Net 등 각종 일자리정보를 활용하여 이력서 자동작성

[모든 국민을 빠짐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, 고용안전망 강화]

- 고용보험의 저변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

- 특고·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「고용보험법」 개정 추진('19년)

*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·예술인 현황('18.9월) : 특고 476,443명, 예술인 55,177명

· 노사가 참여하는 '제3차 고용보험 제도개선TF'에서 세부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, 이를 토대로 하위법령 마련 추진

-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하여 가입요건, 기준보수, 보험혜택 확대 등 제도개편 추진('19년)

* 납부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수급액 : 임금근로자 최대 35.7배 > 자영업자 최대 5.6배

- 근로빈곤층 대상 '한국형 실업부조' 도입 추진

- 저소득자 일수록 실업급여 경험률이 낮고,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일을 통한 자립지원에 한계 →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

* (실업급여 경험률) 중위소득 30% 미만 7.5% vs 중위 150% 이상 15.6%

(기초생활보장) 중위소득 30% 이상은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되어 근로유인 기능 미흡

- 현행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빈곤층의 조속한 재취업과 실직기간 중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

<한국형 실업부조 설계(안)>

- ▲ **지원규모**: 중위소득 60% 이하 근로빈곤층, 중위소득 60~120% 청년층 128만명 중에서 구직의욕,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**20~50만명 지원**
- ▲ **지원내용**: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 한해 **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**

- ▶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(가칭)」 국회 제출(19.상반기)
- ▶ 고용센터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, 담당인력·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(19.下)
- 고용안전망의 보장성 강화
 - (실업급여 보장성 강화)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늘리고,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50→60%로 상향(19.上 관련법 개정, '19.下 시행)
 - * ▶ 아직전 임금대비 지급액(%): 韓 50 vs 獨 60~67, 佛 57~75, 曰 50~80
 - ▶ 지급기간(개월): 韓 8 vs 獨 12(58세 이상 24), 佛 24(55세 이상 36), 曰 11
 - ⇒ 1인당 평균 156일간 898만원 지급 예상(現: 평균 127일, 772만원 지급)
 - (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)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통한 취업 촉진을 위해 취업알선 과정에서 3개월간 월 30만원 지급
 - * 취성패 단계별 지원: 상담·진단(1단계) → 직업훈련(2단계) → 취업알선(3단계)

□ 장애요인과 대응방안

- 고용안전망 강화 등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재정 안정성 확보 시급
 - ☞ (대응) 모성보호비용의 일반회계 지원 확대를 위해 「고용보험법」 개정을 추진하고,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안정화 조치 병행
 - * 모성보호급여 지원추이 : '02년 257억원 → '18년 1조 3,111억원
↳ 모성보호 비용의 일반회계 지원 확대(30%)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
- 한국형 실업부조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의 전문화된 상담인력 확보 필요
 - ☞ (대응) 조직개편, 상담인력 및 전산망 확충 관련 연구용역 실시, 관계부처(행안부·기재부 등)와 인프라 확충방안 적극 협의
 - * 제도설계, 전달체계, 취업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'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T/F' 운영

⑥ 미래인력 양성·직업훈련 혁신

현장의 목소리

- ▶ 국민 89.9% “4차 산업혁명” 시대, 일자리 감소될 것” ... ‘빈부격차’ 심화 우려(4차 산업혁명 인식조사, 미디어연구센터)
- ▶ “빠른 ICT 기술 변화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모든 연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(Digital Literacy) 능력 향상이 필요합니다.” (현장간담회)

정책추진 방향

- 그간 산업인력 양성, 사회안전망 기능 등의 역할을 수행한 직업 훈련에 대해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 새로운 역할 요구
- 국민이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적응을 위한 신기술 분야 훈련 확대 및全생애 촘촘한 직업능력개발 지원

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[신기술 분야 훈련 대폭 확대]

⇒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·직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직자의 디지털 적응훈련 및 청년 등 구직자 대상 신기술 양성훈련 확대

- (재직자) 스마트공장 확산 대응, 수요가 큰 지역의 폴리텍을 특화 캠퍼스로 운영(자치단체·산업계 공동조사), 사업장 맞춤형 현장훈련 지원
 - 신기술 훈련을 우대하는 훈련비 지원 체계 개편, 중소기업 컨소시엄 및 일학습병행 훈련 프로그램에서 신기술 콘텐츠 지속 확대
- (구직자) 폴리텍의 고학력 청년층 대상 ‘하이테크 과정’ 확대(‘18년 545 → ’19년 775명), 제2융합기술교육원(광명) 및 로봇특성화 캠퍼스 신설(영천)
 - 대학 등 역량있는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‘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’ 확대(‘18년 700→’19년 1,300명), 주요 양성훈련인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을 신기술 중심으로 지속 개편*

* ’18년 빅데이터 분석 등 12개 신기술 분야 직종 추가(現 122개 직종)

[촘촘한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 지원]

⇒ 원하는 국민은 “누구나”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직업훈련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발굴·지원하고, 단계별 제도 보완

- (재학단계) 기업주도형 일학습병행 활성화*, 도제학교 졸업생의 숙련 제고를 위한 P-TECH 확대('18년 13→'19년 23개소), 특성화고의 미래유망학과 개편 지원('19년 6개교)
 - * '18년 시범운영 獨 아우스빌등 모델: 28개 기업<'19년 추가공모 예정>
 - 폴리텍에 신기술·신산업 분야 학과 비중 확대('18년 7→'19년 9%), 융·복합 교육훈련 실습환경인 러닝팩토리 구축('19년 4개소)
- (구직단계)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 몰입 및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계비 수준의 장려금 지원 검토
 - 청년니트, 경력단절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학습 지원(pre-training) 방안 마련
- (재직단계) 대·중견기업의 훈련시설 및 폴리텍 등 공동훈련센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체계적 훈련 지원
 - * '18년 대·중소기업 공동훈련: 중기 재직자 13만명<대·중견기업 등 공동훈련센터 64개소>
 -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·비정규직 노동자('19년 10만명), 45세 미만 대기업 저임금 노동자에게 내일배움카드 신규 발급
- (재취업단계) 사업주의 전직지원 의무화 추진(고령자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) 및 지역·산업계 주도 전직훈련 제공
 - 공공직업훈련기관인 폴리텍을 통해 신중년 및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특화훈련 확대('18년 1,250→'19년 1,450명)

[산업현장 변화에 맞춘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개선]

⇒ 직업훈련의 최종 수요자인 산업계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 및 반영하기 위한 직업훈련 인프라 재편

- (국가기술자격) 지식의 확인(검정형)보다는 실무역량을 평가하는 '과정평가형 자격' 확산('18년 111→'19년 143개 종목), 기존 자격에 신기술 교육훈련을 접목한 '융합형 자격' 모델 마련('19년)
- (국가직무능력표준(NCS)) 현장 적용 애로요인을 해소하고, 교육·훈련·자격·인사관리 등 활용만족도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체계 구축
- (인적자원개발) 지역 및 산업계와의 접점인 지역·산업별 인자위의 훈련공급에 대한 전략수립, 심사참여 제도화 등 역할·기능 강화

☞ 산업·훈련현장,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「직업훈련 혁신방안」 마련·발표 ('19.1분기)

IV. 2019년, 이렇게 바꾸겠습니다

취약계층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 기회가 더 많이 찾아갑니다.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지역이 주체가 되어 일자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조선업, 자동차 등 제조업 위기 극복에 정부가 함께 합니다.
노동시간단축 및 최저임금의 현장안착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노동시간 단축으로 내 삶과 일터가 변합니다.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이 강화됩니다.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줄어듭니다.
차별 없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노동위원회 성차별 구제절차 마련 및 고용상 성차별 금지 조항의 전체사업장 확대 적용으로 예방 및 구제절차가 강화됩니다.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정규직 전환으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복되는 고용불안에서 해방됩니다.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배달, 특고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, 산재 근로자의 직장복귀가 더 빠르고 쉬워집니다.
포용과 책임의 사회적 대화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회적 대화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다양한 사회주체들 (청년, 여성, 비정규직, 소상공인 등)의 참여가 보장됩니다.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작은 타협들이 축적되면서, 이를 바탕으로한 사회적 대타협의 기반이 마련됩니다.
고용서비스 혁신 및 고용안전망 강화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전국 고용센터에서 더 쉽고, 더 빠르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실업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확대되고, 특고·예술인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산업현장 변화에 맞춘 직업훈련 혁신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신기술 등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별첨

국정과제 추진현황

국정과제	추진현황	향후계획
⑯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은 다소 감소, 고용률 유지 및 고용의 질은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15~64세 고용률(1~10월) 66.6%로 전년동월대비 동일 ▶ 상용직 비중(10월) 51.2% (+1.2%p) ○ 일자리위원회 설치·운영 및 범정부 일자리 정책 집중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('17.5.16)로 주요 일자리대책 마련 - 일자리 5년 로드맵 발표 ('17.10월) 및 100대 과제 지속 점검 -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확대* 및 정책분야 고용영향평가 내실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17년 249개 → '18년 714개 -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실시 ○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① 현장민생공무원 2.5만명 ('18년), ②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계획 수립 ③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결정 17.0만명 등 국민생활 접점분야의 공공부문 일자리 단계적 총원 ○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·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전국 확산 및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광주 등 8개 지역 컨설팅 실시 - 군산·통영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고용위기 극복 노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조기집행, 지역·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등으로 고용위기 극복 ○ 일자리위원회 운영 및 범정부 일자리정책 집중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처 간 일자리정책 조정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책 마련 - 일자리 5년 로드맵 100대 과제 지속 점검 - 산업별 고용영향평가 강화 - 전 부처의 일자리사업 집행 관리 및 효율화 ○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장민생공무원, 사회서비스 일자리 총원 등 추진 -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및 갈등관리 지속 추진 ○ 지역·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기지역 고용유지, 생활안정 등 고용위기 조기극복 및 적합한 지원대책 마련 -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일자리 사업 지원
⑯ 성별·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('18.3.15) ◇ 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 ('17.12월) 성희롱성폭력 방지 보완대책 발표 ('18.7.3) ◇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 발표 ('18.8.27) ○ 청년 일자리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(정원의 3→5%) 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청년·여성·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지속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년 일자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, 여성 일자리 대책 마련 등 ○ 청년 일자리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추진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년추가고용장려금·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한 양질의 민간일자리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추가고용) 10.7만명, (청년공제) 10.2만명 지원('18.11.30.) - 청년의 자율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21.3만명 지원('18.11.30) <p>○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남녀고용평등법 전사업장 적용 (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, '18.5월) -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 발표, 남녀고용평등법 개정('18.5월) -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(AA) 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도 AA 적용 <p>○ 신중년 인생 3모작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1모작)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지급, 60세 정년제 고용효과 분석 - (2모작)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신설,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설('18.1월~) - (3모작)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('18년 6.5천명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년핵심사업 지속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추가고용) 9→18.8만명, (청년공제) 15.5→25.5만명 - 청년의 자율적인 구직활동 지원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(8만명), 온·오프라인(20개소) 청년센터 오픈 <p>○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·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설('19.下) - 직장 내 성희롱·성차별에 대한 '예방-조사-구제' 시스템 강화 -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체 사업장 대상 성별 임금현황 제출 의무화 <p>○ 신중년 인생 3모작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1모작)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사유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직업훈련 등 개인사유 포함 - (2모작)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단계적 확대(~21년까지 5만명), '신중년 경력형 일자리' 신설('19년 2,500명) - (3모작) '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' 확대('19년 1만명)
⑯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	<p>◇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3개월만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가장 큰 폭 증가(전년동월대비 43.1만명) <p>○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고·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 의결 (고용보험위원회, '18.7.31) -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적용 확대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고용보험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<p>○ 중증적 고용안전망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실업급여 지급기간(최대 8→9개월) 및 지급수준(평균임금의 50→60%)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고용보험법 개정안 환노위 계류 중 -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환노위 계류 중 	<p>◇ 고용보험 저변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고·예술인 고용보험 적용,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 <p>○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고·예술인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 마련('19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제3차 고용보험 제도개선 T/F 논의 -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<p>○ 중증적 고용안전망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('18.12월) - 공적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퇴법 개정 추진('18.12월) -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·시행 ('19년 하반기)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도설계 등 관련 연구용역('18.4~12월) -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(경사노委, '18.8.21) ○ 고용센터 혁신방안 발표('18.12.27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업지원 기능 중심으로 고용센터 혁신, 고용센터 인적역량 확충 등 ○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,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 등 신기술·신산업 분야 훈련과정 운영 - 중소기업 고급훈련 지원 강화 및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확대('18.1월) 등 포용적 직업훈련 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형 실업부조 법령 제정안 발의(~'19.상반기) - 관련 인프라 구축(~'19.12월) ○ 고용센터 혁신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세대 일자리포털 오픈('18.12.27) - 전국 고용센터(100개)에 혁신방안 적용('18.12월 ~) ○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기술·신산업 분야 훈련과정 운영 지속 확대 - SW, 전기 등 4개 분야 SQF 설계 및 활용사례 발굴(~'18.12월) -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추가 확대 추진
▣ 노동존중 사회 실현	<p>◇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(11.22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사정 합의를 통해 청년·비정규직 등 참여주체 확대를 핵심으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전면 개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사관계 법·제도 개선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약노동자 노동기본권 강화 및 공정·대등한 노사관계 형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「노사관계 법·제도 전문가 위원회」 논의 중('18.1월~) ○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, 사회적 대화를 통한 관련 법·제도 개선 등 논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(결사의자유) 노사관계제도·관행개선조 논의 중 ▲(강제노동) 관계부처(국방부, 법무부 등) 협의 중 ○ 근로감독·체불행정 혁신방안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근로감독) 전략적·사전예방적인 근로감독, 근로감독 조직 개편 등 - (체불) 체불 사전예방 강화, 체당금제도 개편,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등 ○ 직장내 괴롭힘 종합대책 발표('18.7월) 및 관련 법률안* 환노위 통과('18.9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근로기준법 등 법사위 제2소위 계류 중 	<p>◇ 각종 사회 현안 관련,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탄력적 근로시간제, 국민연금, ILO 핵심협약 등 현안 관련 협의체 논의 집중 및 합의 도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사관계 법·제도 개선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사관계 법·제도 전문가 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거쳐 합의되는 사항부터 입법 추진 ○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법·제도 개선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(결사의자유) 사회적 대화를 거쳐 단계적 입법 추진 ▲(강제노동) 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노사 의견수렴 및 비준 진행 ○ 근로감독·체불행정 혁신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근로감독)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른 교육 등 역량 강화 - (체불)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('18.12월) 및 개정 추진 ○ 직장내 괴롭힘 종합대책 이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피해자 지원 확대,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

	<p>◇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18년 7,530원(16.4%↑), '19년 8,350원(10.9%↑) 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정규직 로드맵 마련('17.10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명·안전,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채용관행 확립 ○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및 보완대책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상공인·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대책 발표('17.7월, '18.7월·8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('18.11월)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6만명, 62만개소 지급 ○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감축 목표 설정 및 관련 대책 수립·발표('18.1월) -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('18.10월) ○ 임금격차 완화 방안 마련 추진('18.下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대·중소 공정거래·상생협력, 중소기업 수익성 강화, 저임금 시작지대 해소 등 6대 과제 중심 * 경사노위 연구회 운영 	<p>◇ 최저임금 현장 안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약업종 종사자 고용안정 집중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로드맵 세부 정부안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사노委 등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 마련 ○ 최저임금 현장안착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을 면밀히 파악 - '19년 일자리 안정자금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예산(정부안): 2조 8,188억 원 ○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법의 목적 및 보호대상 확대 (근로자→일하는 사람),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 ○ (가칭)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 방안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부 시행계획 마련 및 노사정 논의
<p>[71]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·생활의 균형 실현</p>	<p>◇ 연 노동시간 감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업자: 전년대비 47시간 감소 - 임금근로자: 전년대비 28시간 감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로기준법 개정('18.3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 52시간 근로 확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18.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- 특례업종 대폭 축소(26→5개) 및 특례업종 연속휴식시간(11시간) 보장 - 민간사업장 공휴일 적용 ○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법정부 지원 대책 마련·시행('18.5.17) - 가이드라인('18.6.11),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('18.7.23),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지침 ('18.8.31) 등 대국민 설명자료 마련 ○ 출산·육아지원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(통상임금 40→80%, '17.9월) -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첫째아 상한액 인상(월 150→200만, '18.7월) 	<p>◇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0~299인 사업장 및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사업장 적용 대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사노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추진 ○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문가 및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서 발표 추진 ○ 출산·육아지원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확대(통상임금 40→50%, '19.1월) -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(월 200→250만, '19.1월)